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와 업계의 대응방안

박 영 복 / 상공부 무역협력과 전기기좌

1. COCOM의 개요

1) 개관

가. 설립배경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동구에서 계속된 공산 정권의 출현, '48년 5월 소련의 베를린 봉쇄 등 일련의 동서 대립이 첨예화 되었던 '49년 11월 미국을 위시한 NATO 6개국이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비공식 국제기구로 설립하여 '5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나. 목적

COCOM은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물자와 고도기술의 수출 금지 또는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중점으로 운영하였으나, '70년대 이후부터는 기술 이전 통제로 중점이 바뀌어 고도 기술제품이 주요 통제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에 관련된 물자와 기술의 통제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다. 회원국

'49년 설립 당시 COCOM회원국은 미국과 NATO 6개국을 합한 7개국에 불과했으나 현재 COCOM회원국으로는 그리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페인, 서독, 이태리,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호주 등 1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COCOM은 이러한 회원국들이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비공식 국제기구이므로 회원국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획일적인 규정은 없으며 COCOM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국의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수출통제제도를 수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COCOM은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제시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동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2) 수출통제대상품목 및 기술자료

COCOM 체제에서의 수출통제 대상품목 및 기술자료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고 있는 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출통제대상은 '91년 6월 COCOM에서 결

정된 것으로서 일반산업용 물자, 군수물자, 핵에너지 관련 물자의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148개 품목군이 이에 해당된다.

표-1 COCOM 리스트

구 분	품목 군수
제1부 일반산업용물자 (Industrial List)	103
1장 신소재	
2장 소재가공	
3장 전자설계, 개발 및 생산	
4장 컴퓨터	
5장 전기통신, 정보보완	
6장 센서	
7장 항법 및 항공전자공학	
8장 해양기술	
9장 추진장치	
제2부 군수물자 (Munitions List)	24
제3부 핵관련장비 및 물자 (Atomic Energy List)	21
1장 핵물질	
2장 핵시설	
3장 핵관련장비	
합 계	148

위 [표 1]의 통제대상리스트 중 전자·전기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는 제1부의 3장, 4장, 5장, 6장 등이 해당되며, 이

표-2 COCOM 통제대상품목 중 전자·전기분야

구분	품목군수	주요 품목
제1부		
3장 전자설계 개발 및 생산	15	집적회로(IC), 마이크로웨이브, 음파용 신호처리 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초전도장치, 자기테이프 기록장치, 주파수 합성기, 회로망 분석기 등
4장 컴퓨터	6	내방사선화된 컴퓨터, 디지털컴퓨터 및 관련장비 신경컴퓨터, 광컴퓨터 및 전용관련장비, 마그네틱 및 기억장치의 생산장비 등
5장 전기통신	9	전기통신용 전송장비, 위상배열안테나, 내장 프로그램 제어형 전자교환장치, 전기통신용 통화량 통제장비, 광통신 케이블 및 광섬유, 전기통신개발 시험장비 등
6장 센서	15	해양용 음향송수신시스템, 수중청음기, 광센서 영상카메라, 자유전자레이저, 레이더 시스템 등

부분의 주요 통제대상품목을 나열해보면 [표 2]와 같다.

3) 통제대상국가

COCOM에서 수출을 통제하는 국가는 '92년 5월 현재 15개국이며, 동구와 소련연방의 화해 및 걸프전 등 세계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통제대상국가를 추가 또는 해제하는 방안이 COCOM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로 '92년 5월 1일부터 헝가리가 통제대상국가에서 해제되었으며, 향후 국지전 등 분쟁유발우려가 높은 국가들에 대한 통제대상국가 추가와 체코, 폴란드 등의 추가 해제가 예상되고 있다.

표-3 COCOM 통제 15개 공산국가

구소련, 루마니아, 몽고, 북한, 불가리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중국, 체코, 쿠바, 폴란드, 발트3국(라투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4) COCOM협력국

COCOM은 수출통제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하여 COCOM회원국외에도 협력국(Cooperating Country)이라는 일종의 준회원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바, COCOM의 주도국인 미국이 양자간협상을 통하여 쌍무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선발개도국을 COCOM체제에 편입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COCOM에 준하는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국가를 소위 COCOM협력국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같은 협력국제도를 활용하여 COCOM의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또는 산발개도국에 대해 전략물자의 대공산권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수출관리법 제 5조 K항에 의거 당해국에 대한 미국산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완화해 주는 혜택(5K Benefit)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과 뉴질랜드는 '92년 5월

표-4 COCOM 협력국

뉴질랜드,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한국, 홍콩
--

부터 신규로 협력국이 되는 등 COCOM체제에 동참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91년에는 미국과 대만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조만간 대만이 협력국의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이밖에도 브라질 등 선발개도국을 COCOM체제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COCOM의 최근동향

최근 소련을 비롯한 동구공산권의 와해로 동서 냉전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COCOM도 크게 완화된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국내외 언론 및 일반기업인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COCOM이 비록 동서 냉전체제로 인하여 출발되었다고는 하나 40여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선진국이 고도기술 및 물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또한,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중의 하나로 COCOM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의 전망처럼 크게완화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북한, 쿠바와 같은 국가는 그 체제에 아무런 변화의 징후가 없는 실정이며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국지전 또는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국가 및 테러지원국에 대한 새로운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물질의 개발에 따라 생화학무기, 미사일 관련장비 및 기술, 핵관련 장비 등 새로운 통제대상품목이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히 동구공산권의 몰락으로 COCOM이 크게 완화된다는 기대할 수는 없으며 다만,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적절한 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국제질서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 COCOM 체제의 변화

지난 6월 1일 파리에서 개최된 COCOM 고위급회담에서 각 회원국은 COCOM 협력회의 (COCOM Cooperation Forum)의 창설에 합의하였다. 이는 구소련내 물자의 제3세계 유출을 방지하고 구소련에 대하여는 서방의 선진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 협의체이다. 즉 COCOM은 과거 공산국가였던 동구 및 구소련에 대하여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대신 이들 국가가 COCOM에 준하는 수출통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같은 Forum의 창설은 COCOM이 신국제질서에 부응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COCOM의 변화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제3세계국가 중 국지전 발생위험국 및 테러 발생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생화학, 미사일등 비확산(Non-Proliferation)통제 품목의 수출통제 강화 등이 앞으로 COCOM의 변화 방향으로 전망되고 있다.

2) COCOM 통제대상국가의 조정

'92년 2월초 개최된 COCOM 집행위원회는 구소련 및 동구의 체제변화에 따라 통제대상국의

축소를 논의한 바 있으며, 동회의에서 헝가리의 전략적 위험성 감소를 감안하여, 헝가리가 전략물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체 수출입 통제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면, COCOM의 규제대상(Proscribed Country)에서 제외키로 결정함에 따라, '92년 5월 1일부로 헝가리를 통제대상국가에서 완전히 해제하게 되었다.

한편, 체코 및 폴란드에 대하여는 행정 예외조치(Administrative Exception)를 적용키로 결정하고, 향후 이들 국가가 효과적인 수출입통제를 실시할 경우 통제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하였으며, 발트3국에 대한 통제완화여부는 내년초 COCOM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협의·결정키로 하였다.

3) COCOM 통제대상품목의 축소

COCOM의 통제대상 전략물자는 전반적인 기술수준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기술 및 관련 제품은 계속 통제대상에서 해제되고 새로운 고도기술 제품에 대한 통제수준은 강화되는 실정이며 이같은 통제품목의 축소 또는 강화는 COCOM통제품목의 변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 1일 고위급 회담에서는 특히 통신장비, 컴퓨터 및 공작기계 등 3개분야의 통제품목 축소가 논의되었으나 각국의 입장차이로 금번 회의에서 통제완화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며, 최근의 빠른 기술발전에 따라 추가적인 통제품목의 축소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통제완화에 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3.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1) 제도도입의 배경

'80년대 이후 한국, 싱가포르 등 선발개도국의 기술향상으로 이들 국가들도 COCOM의 대공산권 수출통제 품목인 고도기술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르게 되자, COCOM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미국을 위시한 회원국은 이들 선발개도국들이 COCOM 체제에 준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시행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84년 전략물자수출입통제에 관하여 미국과 처음으로 협의를 가진 이래, COCOM에 준하는 전략물자수출입통제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87년 9월 미국과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의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89년 3월 동 양해각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결차를 거쳐 '89년 5월 발효하게 되었다. '87년 9월 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를 위한 규정을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략물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입 통제를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동제도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90년 7월 1일부터 우선 수입증명서 및 통관증명서의 발급 등 전략물자 수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통제는 '93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2) 수입통제제도 현황

전략물자의 수입통제는 국제적으로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 IC)와 통관증명서(Delivery Verification : DV)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전략물자수입증명서(IC)는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반드시 자국내로 반입할 것을 서약하는 서류로서,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가 자국정부로부터 반입할 것을 서약하는 서류로서, 수출국 정부는 동 IC와 수

입국 정부로부터 송부받은 IC를 대조·심사하여 수출을 승인하게 된다.

이같은 전략물자수입증명서 발급은 시행 첫해인 '90년에는 54건에 불과했던 것이 '91년에는 1,011건(금액 1,592백만불)으로 급증하였고 '92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8월말 현재 약 1,874건(금액 610백만불)에 달하여 전년 동기내에 475.6%로 전략물자 수입증명서의 신청건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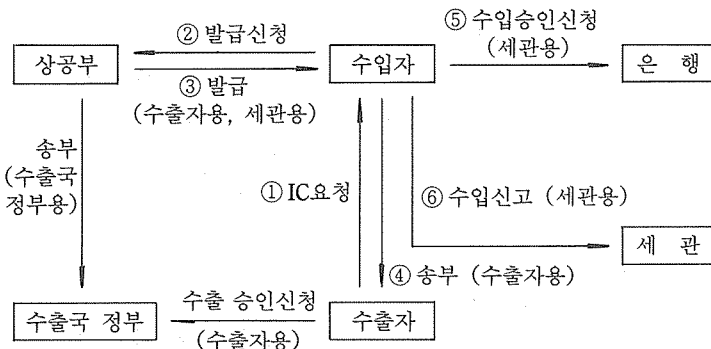
3) 수출통제제도

가. 수출통제 시행경위 및 계획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의 근거법령인 대외무역법 시행령('89. 6월 개정) 제35조에 따르면 상공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요령에 대한 공고(별도공고)를 고시함으로써 전략물자의 수출입 절차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급격한 수출통제에 따른 업계의 부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전략물자 수출입요령에 대한 공고를 고시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상공부의 조사에 의하면 '92년 5월말 현재 COCOM의 통제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약 40여개에 불과하며, 관련업체에서도 COCOM품목중 자사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COCOM의 통제대상 전략물자가 매우 높은 고도기술제품이

圖-1 수입증명서(IC) 발급절차



전자·전기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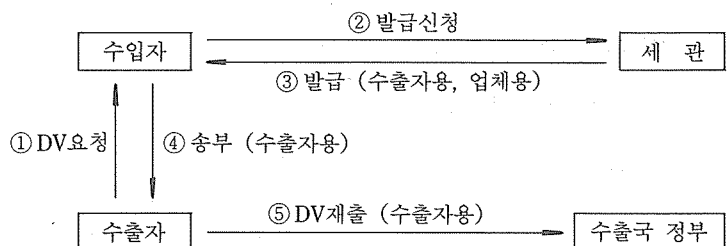
'91년의 1,011건중 444건이 전자·전기분야로서 전체의 43.9%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입품목은 통신장비, 계측기, Computer, 집적회로(IC) 등이며,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략물자 통관증명서(Delivery Verification)는 해당 전략물자 수입국으로 통관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수출국정부(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가 통관지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출국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표-5 국별, 업종별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실적

	'90(7월~12월)				'91				'92(1월~8월)			
	미국	일본	기타	계	미국	일본	기타	계	미국	일본	기타	계
기 계 류	4	11	4	19	224	118	19	381	130	709	7	846
전기·전자	4	14	3	21	320	107	17	444	289	343	1	633
기초·금속	-	-	-	-	25	47	3	75	15	170	1	186
기 타	2	12	-	14	39	65	7	111	23	180	4	126
계	10	37	7	54	628	337	46	1,011	457	1,404	13	1,874

圖-2 통관증명서(DV) 발급절차



기 때문이다. 따라서 COCOM LIST전체를 통제품목으로 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와 업계의 불편은 물론 막대한 행정적 비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COCOM LIST는 우리의 수출관리 기본체계인 국제상품분류체계인 HS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별로 특정기술수준을 초과하는 품목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COCOM LIST의 148개 품목군을 우리나라의 HS품목에 연계할 경우 약 1,200여개 품목에 해당되거나 동일 HS에 속하는 품목일지라도 기술수준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COCOM LIST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우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여 민간자율화를 촉진하는 최근의 추세에 반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수출업계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시행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의무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COCOM의 회원국은 물론 선발개발도상국으로까지 그 의무 이행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수출통제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이의 시행을 늦출 수는 없는 것이 우

리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0년 7월부터 시행된 IC/DV제도를 통한 업계의 COCOM에 대한 인식제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수출입제도를 수립하는 등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제반준비작업을 완료하여 '93년 1월에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고시한 후 몇 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수출통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나. 수출통제 제도의 요지

현재 검토중에 있는 동 수출입공고의 골격을 보면, 수출통제에 관하여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수출통제품목, 수출통제대상국가, 수출허가절차,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허가 등을 주요 요소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출통제품목

수출통제품목은 COCOM LIST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품목을 공고하되, 일반산업용물자의 경우 COCOM LIST 품목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40여개에 불과하여 COCOM LIST와 동일한 품목을 통제대상으로 할 경우, 지나치게 복잡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만을 통제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의 채택을 위하여

는 통제대상품목의 정확한 선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COCOM의 수출통제대상품목 중 일반산업용과 군사력 강화용 등 2중용도(Dual use)로 사용이 가능한 물자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정확히 조사하여 통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필요하게 포함되는 품목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91년 하반기 이후 국내 전략물자생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중 2차 조사를 통해 통제대상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일지라도 이를 개발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된다.

또한, 통제품목은 앞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기술 발전에 따라 통제품목을 추가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조사협조와 자사 생산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정하여 통제하려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다만, 미사일, 총기류 등 직접 군용으로 사용되는 군수물자 24개 품목군과 핵에너지 관련물자 21개 품목군에 대하여는 COCOM LIST의 모든 품목이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2) 수출통제대상국가

COCOM이 규정하는 수출통제대상국 15개국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이 금지되며 여타국가에 대하여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표-6 COCOM LIST와 HS의 비교(예시)

COCOM LIST	HS 분류
○기억 IC로서 다음의 것 •EEPROM중 기억용량이 1M BIT초과 •SRAM으로서 기억용량이 1M BIT초과	○8542119010 : 기억소자 •8542119010 : 기타(기억소자) *EEPROM, SRAM중 1M BIT를 초과하는 것만 전략물자

3) 수출허가절차

수출허가절차는 전략물자의 품목군에 따라 일반산업용 물자는 상공부장관, 군수물자는 국방부장관, 핵에너지 관련물자와 순수기술의 수출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전략물자수출허가를 득한 다음 외국환은행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승인 신청시에는 수출상대국이 COCOM 회원국 또는 협력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최종사용자 진술서, 즉 전략물자를 제3국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수입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출물품이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는 이같은 절차가 불필요하며 전략물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을 받되, 전략물자인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고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략물자 비해당증명』을 받아, 외국환은행 및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4)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략물자는 단순히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당해 품목의 기술수준에 따라 전략물자 여부가 판정되므로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는 데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의 판정을 받아 전략물자인 경우에는 수출허가, 비전략물자인 경우에는 『비해당증명』을 발급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5) 수출통제절차의 간소화 제도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로 인하여 개별 수출시마다 수출허가를 받는 것은 업계나 정부의 입장에서 잘차상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COCOM 회원국도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괄수출허가(일본), 유통허가(Distribution License) 및 Project License(미국)등 다양한 특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포괄허가 또는 D/L허가는 수출절차의 간소화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수출통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Programme : ICP)을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 수입자에게 특정품목을 계속적으로 수출할 경우, 개별 수출허가 대신에 포괄적으로 수출을 승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COCOM 회원국의 포괄수출허가 등 다양한 절차간소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수출입공고에 도입함으로써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다만, 포괄수출허가 등 여러 가지 절차간소화는 기업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동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6) 대업계 홍보활동의 강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시행초기의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수출통제의 취지와 수출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대

업계 홍보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인 바, 상공부는 전략물자 생산동향 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꾸준히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세미나 개최, 무역업계 간담회 및 각종 생산단체와의 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통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대미연수 실시 등 제도적·인간적 측면의 대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대응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성공여부는 전략물자의 유출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전략물자의 불법적인 수출을 막고 전략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업의 스스로의 자율적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유출한 기업에 대하여 외국의 기업일지라도 거래부적격자명단 수록, 추후 자국업체와의 무역을 금지시키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로부터 반도체생산장비, 공작기계, 통신장비 등 고도기술 제품 및 기술을 수입하는 우리기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전략물자수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 미국, 일본 지역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한 경우, 동 수입품을 가공 또는 조립하거나 그대로 제3국에 불법수출할 경우에는 국내법에서의 처벌은 물론 미국, 일본 등에 대한 모든 수입·수출

등이 금지되어 해당 기업의 존립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실시될 전략물자수출통제에 대비한 기업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확인

기업은 먼저 자사의 생산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략물자는 군수용 물자이거나 첨단산업 제품중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자로 알고 있으나, COCOM의 통제품목에는 의외로 많은 품목들을 통제대상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낚시대 및 골프채를 만드는 소재인 탄소섬유재료(Carbon fiber materials)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리라고 생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동 품목은 항공기 및 방탄복 제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로서 COCOM이 규제하는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경우 특히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전략물자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의 수출은 상공부 등 주관부처에서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수출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략물자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만일, 전략물자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상공부 무역협력과로부터 사전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을 받아야 하며, 동 전략물자 해당여부판정은 앞으로 고시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고시 이전이라도 판정을 요청할 경우 상공부는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공고가 고시될 경우 국내 수출통제절차를 숙지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COCOM이 우리 고유의 제도가 아닌 국제적인 제도로서 회원국이 각기 자국의 실정에 맞는 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국, 일본 등 주요 거래상대국의 COCOM 제도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아니될 것이다.

2) 전략물자 수출입절차의 숙지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물론 미국, 일본 등 COCOM 회원국의 수출입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는 COCOM 회원국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의 수출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국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대한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공부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에 법적장치를 마련, 일반 대외무역거래 질서위반의 경우에 준하여 질서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기업의 수출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전략물자를 생산,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제반절차의 이해와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시행 이전일지라도 동구, 구소련 등

COCOM의 수출통제 대상국은 물론 제3국에 대한 수출시에는 실수요자여부, 우회수출가능성 등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3) 내부통제제도의 시행준비

내부통제제도는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내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전략물자의 유출 방지를 기업의 기본정책으로 삼아 수출상당시, 계약시 및 수출이행시에 수입자가 COCOM 규제국에 전략물자를 불법 유출하거나 우회수출할 가능성을 기업 스스로가 심사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내에 일정 규모의 전담통제조직을 갖추는 제도를 말한다.

이같은 내부통제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이 포괄수출허가를 함으로써 개별수출허가면제를 받아 보다 신속한 수출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시행에 앞서 사전에 내부통제제도 수립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시행되어온 COCOM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시행되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 국제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무역제도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무역절차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수립 노력과 기업 스스로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